스페인 El Rosco 판결로 본 방송 프로그램 코너의 저작권 보호

신상진 | 가로재 법률사무소 변호사

1. 들어가며

방송 프로그램 코너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어떤 방송사가 인기 방송 퀴즈 프로그램 한 코너의 게임 방식을 그대로 차용해 자기 방송 프로그램 코너로 제작하였다면, 단순히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일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방송 프로그램 포맷(format)은 프로그램을 관통하는 기본적 구성, 진행 방식, 연출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근래 방송 프로그램과 독립한 거래 대상으로 여겨지며 콘텐츠 제작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아이디어'와 '표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호한 경계성으로 인해 저작물로서의 보호 여부에 관한 다양한 논쟁이 있어 왔으며, 각국 법원 역시 포맷의 성질에 대한 이해와 정책적 고려 등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1]

이와 관련하여 2026. 5. 19. 스페인 대법원(Tribunal Supremo)이 선고한 제758/2026호 판결[2](이하 El Rosco 판결이라고만 함)은 방송 프로그램 포맷,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한 코너의 보호 가능성에 대한 의미 있는 판단을 내렸다. 위 사건에서 문제된 대상은 스페인의 대표적인 퀴즈 프로그램 「Pasapalabra」의 인기 코너 「El Rosco」로, 위 판결은 게임 규칙과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방송 프로그램 포맷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표현으로 평가되는 포맷에 대한 기준이 프로그램 코너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등 쟁점에 대한 최근 스페인 법원의 동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1. 관련 선행 연구로 정윤경/은혜정, 「2017 방송포맷 수출입 현황 및 육성방안 수립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70~99쪽; 민경재, 「방송 프로그램 포맷에 대한 법률적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법학논총』제39권 제3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8., 400면~406면; Gui Peng Tong, 이창재, 2023, 「중국의 TV방송 프로그램 포맷 보호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제30권 제3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154~164쪽.
2. 스페인 대법원(Tribunal Supremo) 2026. 5. 19. 선고 제758/2026호 판결(STS 758/2026).

이 글에서는 먼저 「El Rosco」판결의 소송 개요를 살펴본 후, 스페인 대법원의 주요 판단내용, 이어 이 판결이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저작권법상 보호와 관련하여 갖는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소송의 개요

스페인의 장수 퀴즈 프로그램 「Pasapalabra」는 다양한 코너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순서인 「El Rosco」는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핵심 코너로 알려지며 많은 인기를 얻었다. 「El Rosco」는 알파벳을 원형으로 배치한 화면을 중심으로 참가자가 각 글자에 대응하는 문제를 100초의 제한시간 내에 순서대로 맞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정답을 맞히면 다음 글자로 이동하고, 정답을 모를 경우 차례를 넘긴 뒤 다시 돌아와 문제를 이어서 풀 수 있으며, 제한시간 내 모든 문제를 맞히거나 가장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면 최종 우승자가 된다. 이러한 코너 구성은 프로그램을 상징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아 시청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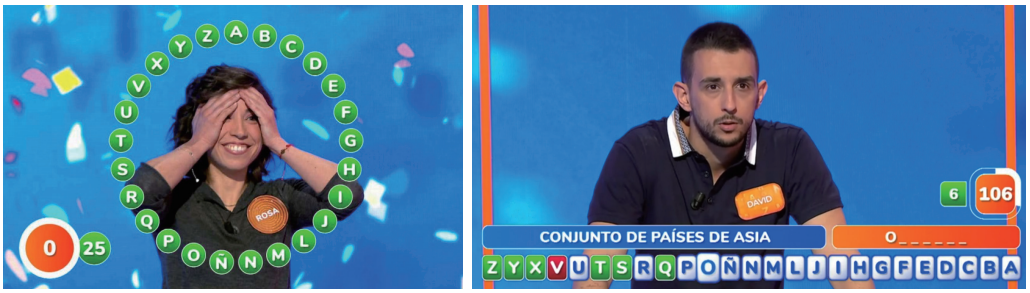

〈좌: Pasapalabra 기존 방송 화면[3] / 우: 판결 후 방송 화면[4]〉

한편, 「Pasapalabra」 프로그램 포맷에 관한 권리는 ITV Studios Global Distribution Ltd.(이하 "ITV")이 보유하고 있는데, 스페인 방송사 Atresmedia Corporación de Medios de Comunicación S.A.(이하 "Atresmedia")은 "ITV"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

3. EFE, "El Tribunal Supremo obliga a Atresmedia a cesar la emisión de 'El Rosco' de 'Pasapalabra'", 2026. 5. 21., 사진: EFE/Antena 3, 〈https://efe.com/cultura/2026-05-21/supremo-obliga-atresmedia-cesar-emision-de-el-rosco-pasapalabra/ (최종 방문일: 2026. 8. 7.)〉.

4. Antena 3, "Pasapalabra", 사진: Antena 3 공식 홈페이지, 〈https://www.antena3.com/programas/pasapalabra/ (최종 방문일: 2026. 8. 2.)〉.

위 「Pasapalabra」를 방송하였다. 이 사건 원고인 MC&F Broadcasting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V.(이하 "MC&F")는 1998년에 만들어진 「21×100」(「El Rosco」의 초기 퀴즈 포맷 명칭)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회사였다.

"MC&F"는 "Atresmedia"가 "ITV"로부터 「Pasapalabra」 포맷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포함된 「El Rosco」 코너는 별개의 저작물로서 자신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Atresmedia"의 방송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MC&F"는 "Atresmedia"를 상대로 「El Rosco」의 이용 중지,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ITV"는 피고로서 위 소송에 참가하였다.

제1심 법원은 먼저 과거 「El Rosco」 코너와 관련하여 존재했던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이유로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다. 그러나 제2심 법원인 바르셀로나 주 법원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종결 결정을 취소하였고, 이후 본안 심리를 진행한 제1심 법원은 "MC&F"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MC&F"가 항소하였고, 제2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한편, 「El Rosco」가 단순한 게임 규칙이 아니라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tresmedia"에 위 코너의 이용 중지와 손해배상 등을 명하였다. 이에 대해 "MC&F",[5] "Atresmedia", "ITV" 모두 상고를 제기하면서 스페인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되었다.

3. 스페인 대법원의 주요 판단 내용

(1) 「El Rosco」는 단순한 게임 규칙인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El Rosco」가 단순한 게임 규칙(las reglas del juego, rules of the game)에 불과한지, 아니면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 포맷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Atresmedia"와 "ITV"는 「El Rosco」가 본질적으로 퀴즈 진행 방식에 관한 아이디어 내지 게임 규칙에 불과하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참가자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알파벳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모르는 문제는 건너뛰었다가 다시 답하는 방식 등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게임 규칙에 불과하며,

5.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 상고.

이러한 요소에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즉, 「El Rosco」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텔레비전 포맷으로 보기 위해 필요한 구체성과 복잡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결국 원심이 보호한 것은 게임 규칙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로서, 이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조약」 제2조 및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제9조 제2항이 정한 아이디어 · 표현 이분법에 반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 및 원칙의 보호를 배제한 「스페인 지식재산권법」 제96조 제4항에도[6]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Levola Hengelo'[7] 판결을 원용하면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객관적이고 충분히 정확하게 특정될 수 있는 표현이어야 하는데 「El Rosco」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스페인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스페인 지적재산권 통합 법률(TRLPI) 제10조 제1항과 WIPO 저작권조약 제2조를 근거로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고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한편, 원심판결이 보호한 「El Rosco」의 요소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일정한 발전과 복잡성을 갖춘 표현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있는 저작물을 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El Rosco」에 관하여 게임의 규칙뿐 아니라 참가자의 배치, 답변에 주어진 시간, 참가자의 이미지 위에 원형으로 표시되는 알파벳 및 답변 결과에 따라 그 색상이 변화하는 그래픽 요소 등이 상세하게 구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El Rosco」가 단순한 게임의 아이디어를 넘어 구체화된 방송 프로그램 포맷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6. 다만,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rtículo 96. Objeto de la protección
4. No estarán protegidos mediante los derechos de autor con arreglo a la presente Ley las ideas y principios en los que se basan cualquiera de los elementos de un programa de ordenador incluidos los que sirven de fundamento a sus interfaces. (제96조. 보호의 대상 4. 컴퓨터프로그램 구성요소의 기초가 되는 아이디어 및 원칙은 이 법에 따른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며, 그 인터페이스의 기초가 되는 아이디어 및 원칙도 또한 같다).

7. CJEU 2018. 11. 13. 선고 C-310/17(Levola Hengelo) 판결.

(2)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독창성 판단기준

"Atresmedia"와 "ITV"는 원심이 「El Rosco」의 주관적 독창성만을 고려하고 객관적 독창성을 도외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의 판례를 중심으로 저작권법상 독창성의 판단기준을 검토하였다.

먼저 대법원은 'Painer',[8] 'Funke Medien',[9] 'Cofemel'[10] 판결을 인용하면서,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은 저작자 자신의 지적 창작이어야 하며, 저작자가 자유롭고 창조적인 선택을 통하여 자신의 개성을 표현한 경우 독창성이 인정된다고 설시하였다. 나아가 최근의 'Mio' 병합사건과[11] 'Institutul' 판결을[12] 검토하면서, 독창성에 관한 CJEU의 판단 기준은 단순히 주관적 독창성과 객관적 독창성을 구분하는 이분법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저작권법상 독창성과 관련하여 저작물에 일정한 수준의 품질이나 특허법상 의미의 신규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핵심은 저작자가 자유롭고 창조적인 선택을 통하여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였는지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포맷과 같은 저작물도 아이디어가 상세하고 형식적으로 구조화된 방식으로 구현되어 일정한 복잡성을 갖춘 창작에 이른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El Rosco」의 경우 게임 규칙과 참가자의 배치, 제한시간 등의 요소에 더하여 참가자의 화면에 중첩되는 원형 그래픽과 답변 결과에 따라 변화하는 색상 등이 창작자들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결정의 결과이고, 이러한 요소들이 다른 알파벳 게임과 구별되는 특성을 부여한다는 점 등을 들어 독창성을 인정하였다.

---

8. CJEU 2011. 12. 1. 선고 C-145/10(Painer) 판결. 저작자의 지적 창작물이 저작자 자신의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창작물에 저작자의 개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는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면서 자유롭고 창조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의 창작적 능력을 표현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판시.
9. CJEU 2019. 7. 29. 선고 C-469/17(Funke Medien) 판결.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자가 자유롭고 창조적인 선택을 통해 자신의 창작적 정신을 독창적으로 표현하여 지적 창작물에 해당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
10. CJEU 2019. 9. 12. 선고 C-683/17(Cofemel) 판결.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저작자 자신의 지적 창작물이라는 의미에서 독창적인 대상이어야 하고, ② 그러한 지적 창작이 표현된 대상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 독창성은 저작자의 개성이 자유롭고 창조적인 선택을 통해 표현된 경우 인정.
11. CJEU 2025. 12. 4. 선고 병합 C-580/23 및 C-795/23(Mio and Others) 판결. 저작권 보호에 신규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행하는 동일 · 유사한 창작물의 존재는 독창성 유무를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다고 판시. 이 사건 스페인 대법원 판결은 이를 원용하면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산업재산권, 특히 특허법상 의미의 신규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시.
12. CJEU 2026. 3. 19. 선고 C-649/23(Institutul G. Călinescu) 판결.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는 기존 저작물의 비평판(critical edition)에 대해서도 저작자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선택을 통해 그 개성이 표현되고 그 결과물이 충분히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식별될 수 있는 경우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

(3) 2014년 스페인 대법원 판례와의 관계

피고들은 원심판결이 스페인 대법원 2014. 10. 22. 선고 제588/2014호 판결[13]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 2014. 판결을 인용하면서 텔레비전 프로그램 포맷의 의미와 저작권 보호에 관한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2014. 10. 22. 선고 제588/2014호 판결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포맷의 저작권 보호 기준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우선, 위 대법원 판결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포맷을 정기적으로 방송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기술적 · 지적 요소의 집합으로서, 모든 방송분에 공통되는 서사구조, 등장인물 및 무대적 요소를 갖추고 통상 문서로 표현된 것[14]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포맷이 「스페인 지식재산권법」 제10조 제1항 보호 대상 저작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독창적인 문학적 · 예술적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모든 텔레비전 프로그램 포맷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단순한 아이디어나 일반적인 관념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포맷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것이 상세하고 형식적으로 구조화된 방식으로 구현(plasmación pormenorizada y formalmente estructurada)되어야 하며, 창작적 활동을 통해 일정한 복잡성을 갖춘 창작으로 발전(creación de cierta complejidad)해야 한다는, 즉 질적 도약(salto cualitativo)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대법원은 「El Rosco」의 텔레비전 포맷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바, 원심판결이 제588/2014호 판결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 주장을 배척하였다.

결국, 이번 판결은 프로그램 포맷에 대한 2014년 대법원 판례를 명확히 확인하는 한편, 이를 프로그램 전체뿐 아니라 개별 코너가 쟁점이 된 당해 사안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13. 스페인 대법원(Tribunal Supremo) 2014. 10. 22. 선고 제588/2014호 판결(STS 588/2014).

14. Aplicado a los programas de televisión, formato, según la mejor doctrina, es el conjunto de elementos técnicos e intelectuales destinados a la realización de un programa de televisión de emisión periódica con una estructura narrativa, unos personajes y unos elementos escénicos comunes para todas las emisiones, normalmente expresados en un documento.

개별 코너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 포맷으로의 저작물성 인정 가능성을 확인시켜 준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4.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El Rosco 판결은 단순히 하나의 퀴즈 프로그램 코너에 관한 저작권 분쟁을 해결한 사례를 넘어,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저작권 보호 범위에 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이 판결은 방송 프로그램의 개별 코너도 독립적인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종래 방송 포맷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프로그램 전체를 하나의 포맷으로 전제하여 이루어졌으나, El Rosco 판결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특정 코너 역시 독자적인 창작성과 구체성을 갖춘 경우, 즉 2014년 스페인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방송 프로그램 포맷이 꼭 프로그램 전체로서의 구성만이 아닌, 여러 개의 독립적인 창작 단위로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서, 향후 방송 포맷의 라이선스 계약이나 권리 귀속 문제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예컨대 프로그램 코너 단위로 포맷 거래의 대상이 된다든지, 코너별로 권리 귀속을 달리하는 등).

둘째, 이 판결은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을 기본 원칙으로 유지하면서도 방송 포맷의 특수성을 충실히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게임 규칙 자체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게임 규칙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청각적 요소와 연출, 진행 방식 등이 창작적으로 결합된 결과를 보호 대상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 방송 포맷의 저작물성은 개별 요소 하나하나의 독창성 여부가 아니라, 그러한 요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선택되고 배열되어 하나의 표현을 형성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셋째, El Rosco 판결은 CJEU가 확립한 독창성 법리를 방송 프로그램 포맷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대법원은 기존 CJEU 판례가 제시한 '저작자 자신의 지적 창작'이라는 기준을 방송 포맷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이는 방송 포맷이 저작권법상 전형적인 저작물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독창성 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일반 저작물과 동일한 원칙 아래에서

창작적 선택과 표현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나아가 이번 판결은 기존 2014년 스페인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 아닌, 그 법리를 방송 프로그램 개별 코너에 구체적으로 확장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국내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논의는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이른바 '짝' 사건)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대법원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제작자의 창작적 의도에 따라 선택 · 배열됨으로써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있는 표현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편집저작물의 법리를 적용해 저작권 보호를 인정한 판결로서 평가되며,[15] 이를 기초로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저작물성은 개별 요소가 아닌,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방법으로서의 '조합의 독창성(originality by combination)'에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되기도 한다.[16]

El Rosco 판결은 이러한 국내 논의와 상당 부분 맥락을 같이하면서도, 프로그램 전체를 넘어 개별 코너까지 독립적인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로서 의미 있는 비교법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나아가 최근 영상 콘텐츠의 소비 환경에 있어 짧은 영상, 프로그램 개별 코너의 분리 활용 비중이 높아진 만큼, 특정 코너를 둘러싼 포맷 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바, 실무적 관점에서도 El Rosco 판결의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5. 임원선, 「방송 포맷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재검토」, 『계간 저작권』 148호(37권4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4. 12., 167면.

16. 홍승기,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저작물성 – 대법원 2014다49180 판결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제22권 제2호, 한국정보법학회, 2018, 52~53면.